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071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3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 공제율 상향, 적용기한 연장 등 ····· 3

Ⅰ. 개요

1.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07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은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6. 25.

(3) 회 부 일 : 2025. 6.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및 문화체육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 공제율 상향, 적용기한 연장 등

가. 제도 개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체육시설이용료에 대해서는 30%[1],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30%,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함.

또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및 도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한도를 별도로 적용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 및 공제한도]

<table>
<tr><th colspan="2">소득공제율</th><th colspan="3">공제한도</th></tr>
<tr><th>구분</th><th>공제율</th><th colspan="2">구분</th><th>7천만원이하</th><th>7천만원초과</th></tr>
<tr><td>❶ 신용카드</td><td>15%</td><td colspan="2" rowspan="2">기본공제 한도</td><td rowspan="2">300만원</td><td rowspan="2">250만원</td></tr>
<tr><td>❷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
<tr><td>❸ 전통시장</td><td>40%</td><td rowspan="2">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2">300만원</td><td rowspan="2">200만원</td></tr>
<tr><td>❹ 대중교통</td><td>40%</td><td>대중교통</td></tr>
</table>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❺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체육시설 이용료 등	30%		도서 등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9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도입 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한이 10차례 연장되어 2025년말 일몰 예정임.[2] 2005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로 신용카드 사용 유도차원의 조세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어 공제율을 소폭 인하하였으며,[3] 2007년에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의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공제문턱을 총급여액의 20% 초과로 상향하고, 공제적용률을 20%로 증가시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높여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였음.[4] 이후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 인상(2009년 개정),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1년 개정),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3년 개정), 서민 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한 급여수준별 한도 조정(2016년 개정), 도서공연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8년 개정) 등 소비심리 개선

2) 최초 도입 시 적용기한은 2002. 11. 30. 이었으나 2005. 11. 30. ⇒ 2007. 11. 30. ⇒ 2009. 12. 31. ⇒ 2011. 12. 31. ⇒ 2014. 12. 31. ⇒ 2016. 12. 31. ⇒ 2018. 12. 31. ⇒ 2019. 12. 31. ⇒ 2022. 12. 31. ⇒ 2025. 12. 31.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음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종전 20%에서 15%로 하향조정함.

4) 이를 통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를 늘려야하며, 일단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음. 또한 과표양성화와 무관한 지출 또는 중복공제 성격의 지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상에서 배제하였음.

과 건전소비 문화 장착,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조 8,537억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4조 884억원에 달하였으며, 2025년에는 4조 3,859억원, 2026년에는 4조 6,29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조세지출액	21,176	22,553	24,698	31,882	31,675	39,458	40,884	43,859	46,297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규모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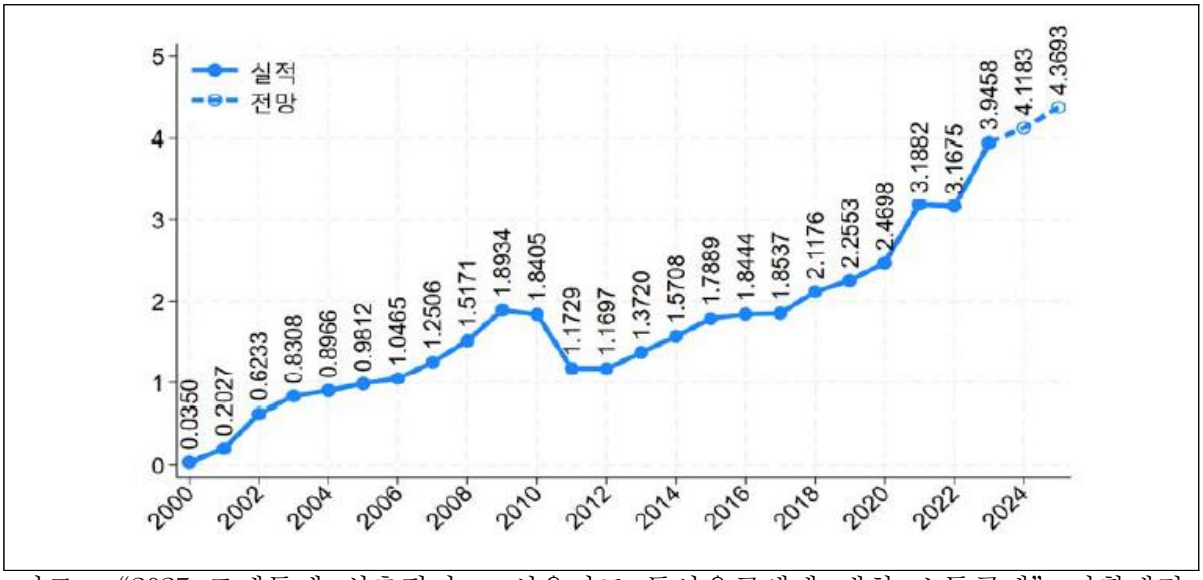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 신용카드 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획재정부, 2025. 9.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전재수의원안, 한정애의원안, 김재섭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박충권의원안, 추경호의원안(2), 양부남의원안, 조승래의원안, 박홍근의원안, 정부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6조의2)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
<tr><th>구분</th><th>공제율</th></tr>
<tr><td>- 신용카드</td><td>15%</td></tr>
<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
<tr><td>-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td></tr>
<tr><td>- 대중교통이용분</td><td>40%</td></tr>
<tr><td>- 전통시장사용분</td><td>40%</td></tr>
</table>
○ 공제한도:
<table>
<tr><th colspan="2">총급여
공제한도</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
<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
<tr><td rowspan="3">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만원</td><td rowspan="2">200만원</td></tr>
<tr><td>대중교통</td></tr>
<tr><td>문화비</td><td>-</td></tr>
</table>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td><td>□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
<tr><th>구분</th><th>공제율</th></tr>
<tr><td>- 신용카드</td><td>15%</td></tr>
<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
<tr><td>-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td></tr>
<tr><td>- 대중교통이용분</td><td>40%</td></tr>
<tr><td>- 전통시장사용분</td><td>40%</td></tr>
</table>
○ 공제한도: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전재수의원안, 한정애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박충권의원안, 추경호의원안(12194), 추경호의원안(12274), 양부남의원안, 조승래의원안, 정부안)
2030년 12월 31일 (김재섭의원안, 최은석의원안)</td></tr>
</table>

* 전재수의원안 2025. 4. 15. 발의(의안번호 9834), 한정애의원안 2025. 6.5.(의안번호 10663), 김재섭의원안 2025. 6. 18. 발의(의안번호 10916), 최은석의원안 2025. 6. 25. 발

의(의안번호 11071), 이수진의원안 2025. 7. 14. 발의(의안번호 11458), 박충권의원안 2025. 8. 5. 발의(의안번호 11974), 추경호의원안 2025. 8. 14. 발의(의안번호 12194), 추경호의원안 2025. 8. 20. 발의(의안번호 12274), 양부남의원안 2025. 9.12. 발의(의안번호 12932). 조승래의원안 2025. 9. 24. 발의(의안번호 13211), 박홍근의원안 2025.10. 27. 발의(의안번호 13724),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12건의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연장하려는 것으로,

전재수의원안, 한정애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박충권의원안, 추경호의원안(12194), 추경호의원안(12274), 양부남의원안, 조승래의원안, 박홍근의원안, 정부안은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김재섭의원안, 최은석의원안은 2030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첫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조세지출 규모가 2024년 4조 884억원이고, 2025년의 잠정 조세지출 규모는 4조 3,859억원, 2026년의 잠정 조세지출 규모는 4조 6,297억원 수준으로 전체 조세특례 항목에서 4번째로 큰 규모로서,

동 소득공제가 일몰될 경우 근로소득 가계의 세 부담 증가, 가처분소득 감소 및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사실상 보편적인 공제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소득공제가 일몰될 경우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동 제도는 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임. 그런데 약 20년이 넘게 동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현금영수증 수취 문화의 정착 등이 이루어져 과세표준의 양성화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보임. 2024년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제는 약 296억 7천만 건에 달하며, 결제금액은 약 1,316조원으로 2017년에 비해 결제 건수는 약 103억건, 결제금액은 약 442조원 증가하였음. 또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거래 건수도 약 45억 8,300만건 수준이고, 관련 거래액도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

[연도별 신용카드 등 결제 현황]

(단위: 천건, 십억원)

연도	2001년	2007년	2012년	2017년	2023년	2024년
건수	1,009,462	4,017,248.1	10,069,586.2	19,341,790.9	28,608,422.5	29,667,394.6
금액	229,951.4	423,063.4	648,263.9	874,205.4	1,262,875.4	1,316,056

*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IC카드를 포함
자료: 「지급수단별 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및 발급건수]

(단위: 억원, 백만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발급금액	1,185,761	1,230,447	1,420,393	1,562,471	1,671,235
발급건수	4,508	4,132	4,327	4,476	4,583

자료: 「9-3-3.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I (지역, 업태, 발급금액)」, 국세통계포털(TASIS)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동 조세특례의 조세지출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미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있고,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납세자에게까지 동 제도를 단순 적용할 경우, 결제수단 양성화라는 행태의 변화 없이 세수만 줄어드는 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사중손실 발생 등 비효율이 증가될 우려가 있음. 특히 기획재정부가 수행한 2025년 조세특례심층평가 결과에 따르면 동 제도를 확대하더라도 추가적인 과표양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제도를 축소하더라도 전자결제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제시됨.[5)]

둘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고소득자에 더 크게 귀착되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동 특례제도는 소득공제 제도로서, 「소득세법」 상 더 높은 한계세율[6)]에 직면하고 있고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여력이 더 큰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더 큰 세제혜택이 귀착되어 조세의 수직적 형평

5)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 신용카드 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획재정부, 2025.9.

6)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한계세율
~1,400만원	6%
1,400만원 ~ 5,000만원	15%
5,0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5억원	35%
1.5억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	45%

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들과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2026년~2029년 기간 동안 연평균 약 4조~4.8조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일몰연장에 따른 세수추계 내역]

(단위: 억원)

세수효과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전재수의원안(일몰 연장)	△38,956	△41,364	△43,921	-	-	△124,241	△41,434
한정애의원안(일몰 연장)	△38,490	△40,869	△43,396	-	-	△122,755	△40,918
김재섭의원안(일몰연장)	△38,490	△40,869	△43,396	△46,078	△48,926	△217,760	△43,552
최은석의원안(일몰연장)	△38,490	△40,869	△43,396	△46,078	△48,926	△217,760	△43,552
이수진의원안(일몰연장)	△38,490	△40,869	△43,396	-	-	△122,755	△40,918
박충권의원안(일몰연장)	△38,490	△40,869	△43,396	-	-	△122,755	△40,918
추경호의원안(일몰연장)	△45,323	△48,107	△51,080	-	-	△144,510	△48,170
양부남의원안(일몰연장)	△45,323	△48,107	△51,080	-	-	△144,510	△48,170
조승래의원안(일몰연장)	△45,323	△48,107	△51,080		-	△144,510	△48,170

문 의 처
02)6788-5149

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 및 소상공인 대상 공제 사용분 소득공제 신설 등(최은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양부남의원안, 박홍근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
<td>□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6조의2)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
<tr><th>구분</th><th>공제율</th></tr>
<tr><td>- 신용카드</td><td>15%</td></tr>
<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
<tr><td>-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td></tr>
<tr><td>- 대중교통이용분</td><td>40%</td></tr>
<tr><td>- 전통시장사용분</td><td>40%</td></tr>
<tr><td colspan="2">- <신 설></td></tr>
</table>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td>
<td>□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및 소상공인 매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
<tr><th>구분</th><th>공제율</th></tr>
<tr><td>- 신용카드</td><td>15%</td></tr>
<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
<tr><td>-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td></tr>
<tr><td>- 대중교통이용분</td><td>40%</td></tr>
<tr><td>- 전통시장사용분 (최은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td><td>50%</td></tr>
<tr><td>-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양부남의원안)</td><td>40%</td></tr>
<tr><td>-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td><td>30%</td></tr>
</table>

○ 적용기한:
2028.12.31. (추경호의원안, 양부남의원안, 박홍근의원안)
2030.12.31. (최은석의원안)</td>
</tr>
</table>

* 최은석의원안 2025. 6. 25. 발의(의안번호 11071), 추경호의원안 2025. 8. 14. 발의(의안번호 12194), 양부남의원안, 2025. 9. 12. 발의(의안번호 12932), 박홍근의원안 2025.10. 27. 발의(의안번호 13724)

□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조정하고(최은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②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양부남의원안), ③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박홍근의원안).

□ 먼저 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 비해 10%p 높은 50%로 상향 조정하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체감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비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소비심리의 자극을 도모할 수 있음. 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7]에 따르면, 2025년은 미국 관세충격 등으로

7)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2025. 9.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됨과 동시에, 국내 경제는 먹거리 물가 등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물가 불안정성이 우려되고, 이상기후· 국제유가의 변동성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임. 또한, 2026년 이후에도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소비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수 있음. 이를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전통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상향되는 경우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

둘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2024년 이후 전통시장 체감 BSI가 100 미만으로 낮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확대는 전통시장으로의 소비자 방문 및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전통시장 체감 및 전망 경기지수(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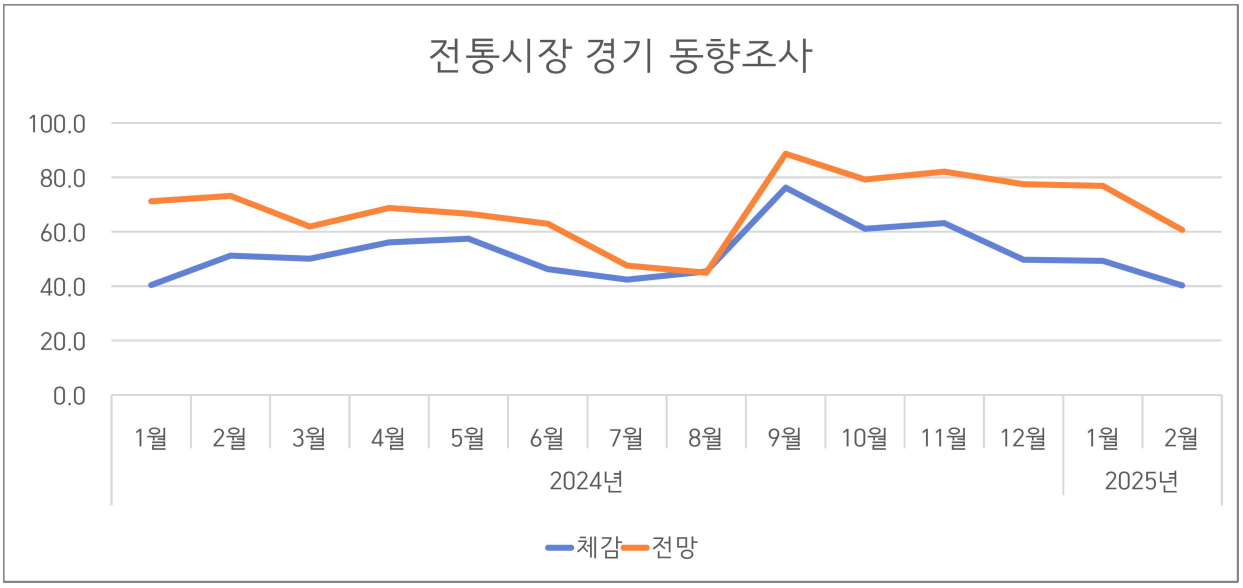

* BSI 100 이상은 경기 호전, 100 미만은 경기 악화를 의미
자료: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 1.

다만, 전통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동 세제지원을 통한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식료품 주 구입장소 중 재래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12.2%에 불과하였고, 식료품 구입장소를 선택하는 주된 기준은 접근성, 가격, 품질 순이며, 저렴한 가격을 기준으로 식료품 구입장소를 선택하는 소비자 비중도 감소추세인 것으로 조사[8]되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정책은 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 소비 진작에 기여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식료품 주 구입 장소 비교]

(단위: %)

구입 장소	비중
대형할인점	32.5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29.9
대기업이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	15.7
재래(전통)시장	**12.2**
통신판매	5.4
편의점	1.2
친환경 식품 전문점	0.7
백화점	0.7
기타	1.7

자료: 「2023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p.6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12.

8) 「2023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12.

[가구의 식료품 주 구입장소 선택 이유]

(단위: %)

이 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거리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해서	30.3	29.5	31.3	27.8
- 품질이 좋아서	19.9	18.7	19.2	18.3
- 가격이 저렴해서	**19.5**	**18.5**	**16.0**	**18.8**
- 식료품 외 다른 상품도 구입	13.1	14.2	15.5	15.0
- 직접 배달해주므로	6.4	5.8	5.3	6.4
- 상품이 다양해서	9.6	10.8	10.2	10.6
-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서	1.2	2.1	2.2	2.7
- 지역산 농식품 구입	0.0	0.4	0.2	0.4

자료: 「2023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p.6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12.

둘째, 소비진작을 위한 소득공제율의 상향 정책이 상시적으로 유지될 경우 일정 기간 도과 후 해당 정책의 효과가 약화된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항구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9)]

□ 다음, 양부남의원안은 소상공인 및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려는 것인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소득공제율은 40% 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9) 개인소득세 인하는 2~3년 이후 부터는 GDP와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모두 소멸된다는 경험적 연구 또한 존재함. “Short term tax cuts, long term stimulus”, National Bureau of Econmic Research, 2022, James Cloyne.

첫째,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소상공인의 체감 및 전망 BSI[10] 지수는 전월대비 악화 되고 있어 소상공인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됨.

[소상공인 연간 BSI 체감 및 전망추이]

자료: 「2025 1월 소상공인 경기동향(BSI) 조사보고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 10.

한편, 코로나19 지원 정책의 영향 등으로 2022년까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이 2023년에 들어 상승세로 전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제지원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10) BSI 지수란 사업체의 실적과 계획 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경기 예측 지표로서, BSI 지수가 100 이상인 경우 경기 실적이 호전되었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인 경우는 경기 실적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함.

[개인사업자 폐업자 및 폐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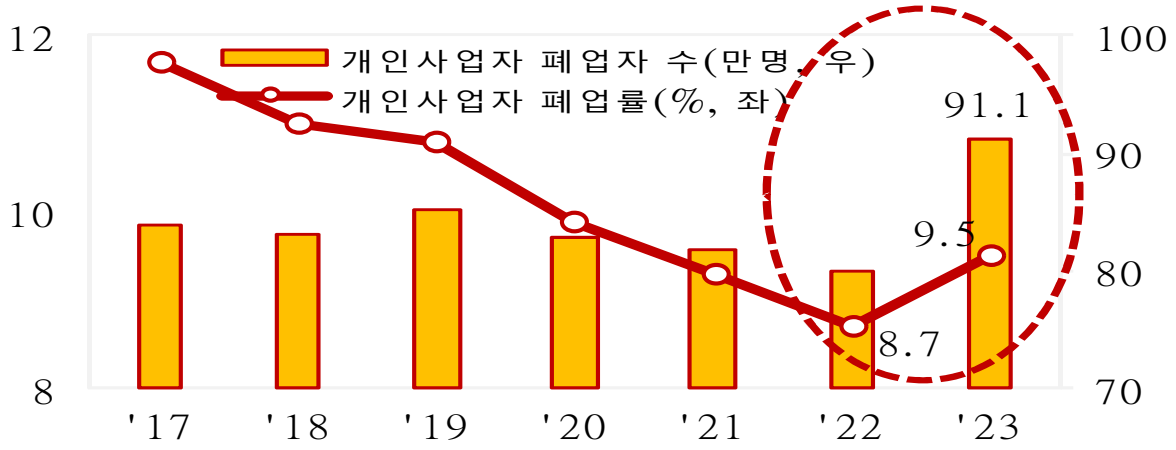

자료: 국세통계(통계청)

둘째, 소상공인의 경기회복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부는 통상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세제지원 정책을 추진[11]하여 왔는데, 전통시장이 전체 소상공인에 대한 대표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는 약 412만 5,000개[12]로 조사되었는데, 2022년 전통시장 내 점포 수는 23만 2,206개[13]로 조사되어 전체 소상공인 중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의 비중은 약 5.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임[14].

따라서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수 있음.

11) 예를 들어 2023년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p 한시 상향하여 적용한바 있음.

12)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및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3.12.27.

13) 「2022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 12.

14) 참고로 위 조사들에 따를 때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는 714만 3,000명이고, 전통시장 점포 종사자 수는 31만 6,315명으로 전통시장이 약 4.4%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제대상 확대로 인한 세수감이 발생할 수 있음. 2023년 귀속소득 기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세감면액이 약 3조 9,458억원[15]이고, 2022년 기준 소상공인의 연간 총 매출액은 전통시장의 연간 총 매출액의 약 24.9배 수준임. 개정안과 같이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되는 경우 적용대상의 확대로 상당 규모의 세수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022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매출액 비교]

구 분	사업체 수	연간 총 매출액
소상공인	4,125,000개	965조 2,500억원
전통시장	232,206개	38조 8,179억원

자료: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통계청·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3.12.27.
「2022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 12

둘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전통시장 소비를 구축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양부남의원안의 경우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소상공인사용분에 대한 별도의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에 비해 비대면 주문이 간편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 등과 합산하여 적용됨. 이 경우 전

15) 2024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세지출액은 4조 1,18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통시장에서 구매하였을 물품을 전통시장이 아닌 다른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전통시장사용분 추가공제 제도의 도입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소비자가 소상공인 영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후적으로 조세지출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16)]

□ 또한 박홍근의원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 장기화에 따라 외식업종의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 경기활성화와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식업종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최근 5년간(2021-2025년)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를 보면, 2025년 기준 72.76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또한 직전 4개 분기의 평균 역시 약 72.8로 2024년 연평균(75.6)보다 낮아, 팬데믹 당시의 불황 이후 잠시 반등한 이후 재차 둔화국면이 길어지는 추세임.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실질구매력의 둔화와 음식 가격 상승이 누적됨에 따라 외식빈도 및 객단가가 저하된 점, 배달업·밀키트 등으로의 수요가 분산된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또한, 비용 측면에서는 인건비·임차료·식자재·플랫폼 수수료 등 고정·변동비가 커

16) 기획재정부의 의견임.

짐에 따라 가격 전가가 어려운 영세업장 위주로 영업이익율 저하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최근5년간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

2021				2022				2023				2024				2025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67.2	69.8	5.72	0.34	70.8	85.6	89.8	82.5	6.91	83.3	79.4	73.7	79.3	75.6	76.0	71.5	70.8	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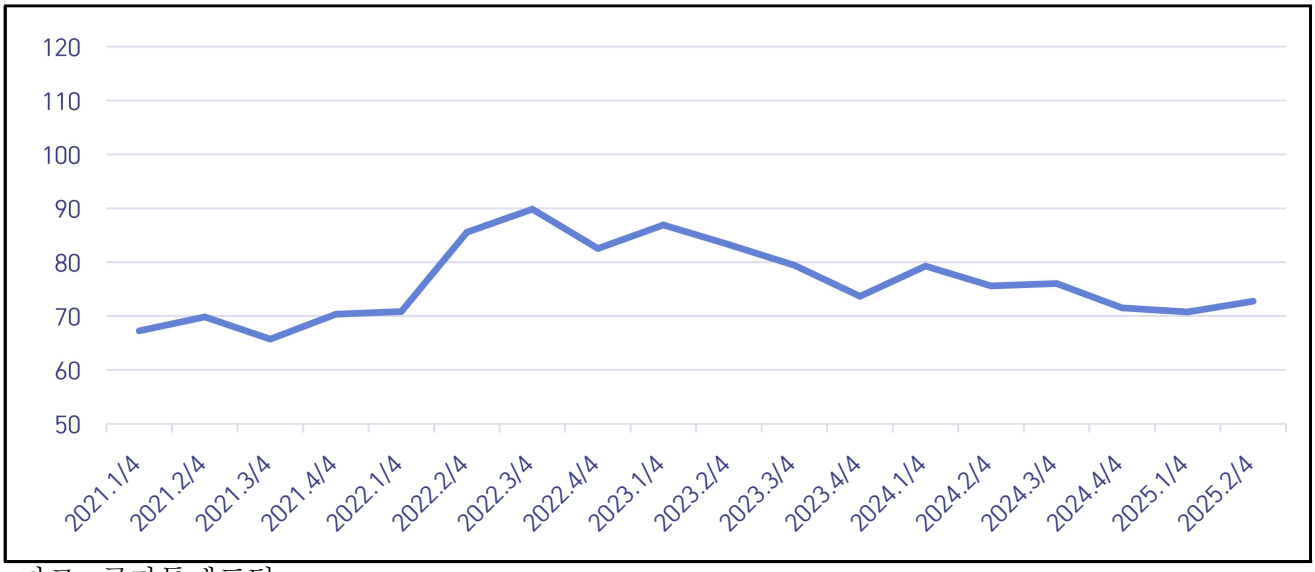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Korea Restaurant Business Index)는 외식산업의 성장과 위축의 정도에 대해 종사자들의 판단·예측의 변화 추이를 측정하여 산업 경기동향을 분기별로 보여주는 체감지표

* 지수는 50~150을 가지며, 기준치는 100, 100초과는 성장, 100미만은 위축 의미

[외식산업 매출액 규모별 매출 대비 영업이익율]

(단위:%)

연도		2021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규모별	5천만원 미만	19.4	11.1	10.6	0.0	4.3
	5천만원 ~1억원 미만	16.0	11.1	11.7	6.5	5.6
	1억원 ~5억원 미만	15.0	12.7	12.8	10.3	8.1
	5억원 이상	14.4	10.1	7.0	15.9	11.5
전체	계	15.0	12.1	11.2	11.6	8.9

자료: 국가통계포털

따라서 외식업 결제에 한정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할 경우,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인 외식업으로 지출 유인이 제공될 수 있고, 개인 소비자의 소액 다빈도 카드결제에 매출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외식업체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얻음에 따라 외식 관련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함과 동시에 외식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현금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세 외식업체 업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원을 통해 신용카드 등 결제로 유도할 경우, 과세표준의 투명성·정합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동 특례제도는 소득공제 제도로서, 「소득세법」 상 더 높은 한계세율[17]에 직면하고 있고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여력이 더 큰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더 큰 세제혜택이 귀착되어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외식지출의 경우 면세자 등 취약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 근로자에게 귀착될 우려가 있음.

17)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한계세율
~1,400만원	6%
1,400만원 ~ 5,000만원	15%
5,0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5억원	35%
1.5억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	45%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주된 목적은 현금거래의 제도권으로 편입함으로써 과세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있는데, 동 제도에 외식업 활성화나 민생부담 완화 등 경기부양·소비진작 기능까지 부여하면 정책 목표가 혼재되어 제도 운용의 효과를 식별하기 곤란해지고, 재원 투입 대비 효율성 분석도 왜곡될 수 있음.

또한, 외식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을 설정할 경우, 추가 수요가 외식가격 상승으로 전가되어 외식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되어 해당 업역에 대한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가 저감될 우려가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들과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2026년~2029년 기간 동안 연평균 약 1,030~1,097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개정안에 따른 세수추계 내역]

(단위: 억원)

세수효과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최은석의원안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조정)	△939	△997	△1,059	△1,124	△1,193	△1,267	△6,579	△1,097
추경호의원안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940	△997	△1,058	△1,124	-	-	△4,119	△1,030

문 의 처
02)6788-5149

라. 전년 동기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김용만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6조의2)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
<tr><th>구분</th><th>공제율</th></tr>
<tr><td>- 신용카드</td><td>15%</td></tr>
<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
<tr><td>-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td></tr>
<tr><td>- 대중교통이용분</td><td>40%</td></tr>
<tr><td>- 전통시장사용분</td><td>40%</td></tr>
<tr><td>- <신 설></td><td></td></tr>
</table>
○ 공제한도:
<table>
<tr><th colspan="2">총급여 / 공제한도</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
<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
<tr><td rowspan="3">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만원</td><td rowspan="2">200만원</td></tr>
<tr><td>대중교통</td></tr>
<tr><td>문화비</td><td>-</td></tr>
</table></td>
<td>○ 2025년 전년대비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
<tr><th>구분</th><th>공제율</th></tr>
<tr><td>- 신용카드</td><td>15%</td></tr>
<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
<tr><td>-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td></tr>
<tr><td>- 대중교통이용분</td><td>40%</td></tr>
<tr><td>- 전통시장사용분</td><td>40%</td></tr>
<tr><td>- 2024년 대비 2025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김용만의원안)</td><td>20%</td></tr>
</table>
○ 공제한도:
<table>
<tr><th colspan="2">총급여 / 공제한도</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
<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
<tr><td rowspan="4">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만원</td><td rowspan="2">200만원</td></tr>
<tr><td>대중교통</td></tr>
<tr><td>문화비</td><td>해당없음</td></tr>
<tr><td>25년 소비증가분</td><td colspan="2">100만원</td></tr>
</table>
○ 시행일: 2026.1.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td></tr>
</table>

* 김용만의원안 2025. 2. 5. 발의(의안번호 7919)

□ 개정안은 2025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18] 중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보다 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2024년에 한시 적용하기로 한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2021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1년 연말정산에서 최초 적용되었음. 그 당시는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였으며, 전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5%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10%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설계되었음. 2022년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한 지원책으로 동 소득공제의 기한을 2022년까지 1년 연장하고, 2022년 전통시장사용금액 중 전년도 사용액 대비 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

---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하며, 공제율을 20%로 10%p 상향 조정하였다가, 2023년 4월 동 조항들이 삭제된 바 있음. 이후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2024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다시 시행된 바 있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가계 소비심리를 자극함으로써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19]에 따르면, 2025년은 미국 관세 충격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됨과 동시에, 국내 경제는 먹거리 물가 등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물가 불안정성이 우려되고, 이상기후· 국제유가의 변동성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임. 또한 2026년 이후에도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소비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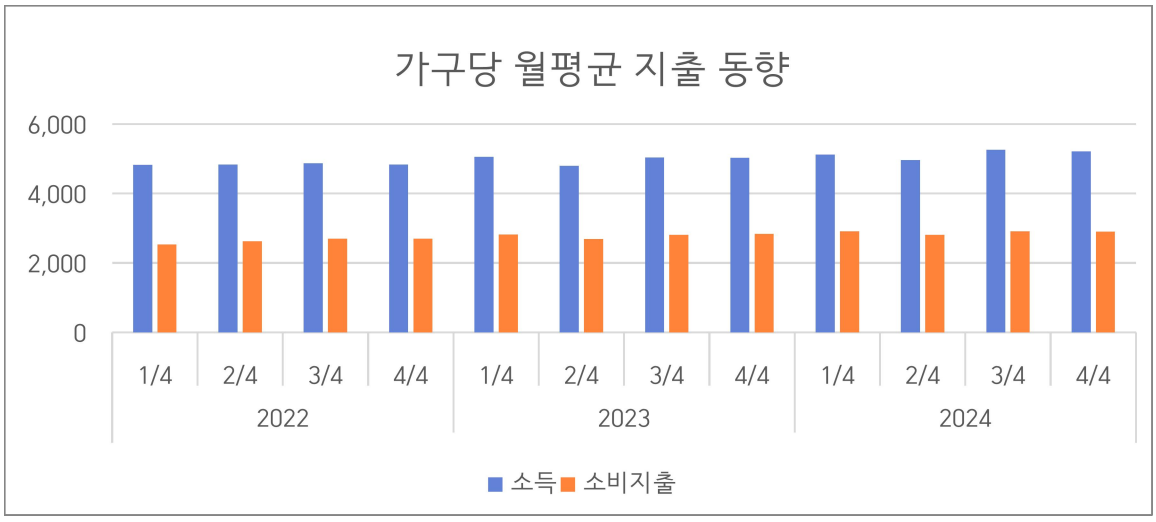

19)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2025. 9.

또한 한국은행은 경제전망보고서(2025.8)에서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24년 대비 1.1% 하향된 0.9%로 제시하고 있어, 경제의 하방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그 공제비율을 20%로 이전에 비해 상향할 경우 가계 소비심리 회복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둘째,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최근 소상공인 체감 및 전망 BSI가 지속적으로 100 미만으로 낮게 조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할 경우, 2025년 내의 소비 전반을 진작시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소상공인시장 경기지수(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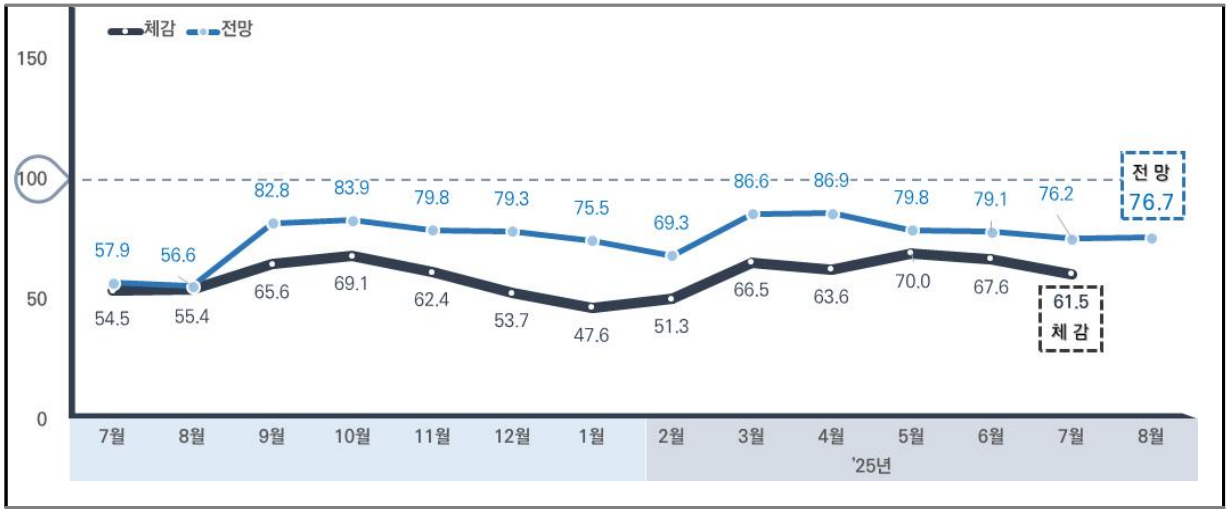

* BSI 100 이상은 경기 호전, 100 미만은 경기 악화를 의미
자료: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 2025. 7.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4년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되었던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할 경우 자칫 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소비로 이연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의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는 한시적인 제도 시행으로 민간소비를 유도하려는 정책이나,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소득공제가 상시화될 경우, 민간은 해당 연도 소비를 억제하고, 차년도 소비를 증대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소비 성향을 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연도 소비의 증가폭은 크지 않아, 당초 개정안이 의도한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음.[20]

둘째,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는 경우, 소비 여력이 고소득자·자산가일수록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

셋째, 개정안은 2024년 대비 2025년 사용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나, 개정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2025년 11월 이후이므로, 실질적으로 2025년도 중 소비 증가의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 미국의 영구적인 Bush tax cut은 0.29의 재정승수 효과를 얻었으나, 2008년 일회성 세금 도입은 그 재정승수가 1.26으로 일시적인 세제지원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경험적 연구가 존재함.Zandi, Mark. "A Second Quick Boost From Government Could Spark Recovery“
또한 개인소득세 인하는 2~3년 이후 부터는 GDP와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모두 소멸된다는 경험적 연구 또한 존재함. “Short term tax cuts, long term stimulus”, National Bureau of Econmic Research, 2022, James Cloyne.

참고로, 202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21] 에서는 2021년과 2022년에 시행된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따른 추가 소득공제 정책을 분석하였는데, ① 동 제도를 적용하였음에도 근로소득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증가율을 전략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았으며, ② 동 제도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 또는 총지출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추가 소득공제 정책이 소비 진작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49

21)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 신용카드 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획재정부, 2025.9.

마.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김재원의원안, 전재수의원안, 김재섭의원안, 조승래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6조의2)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
<tr><th>구분</th><th>공제율</th></tr>
<tr><td>- 전통시장사용분</td><td>40%</td></tr>
<tr><td>- 대중교통이용분</td><td>40%</td></tr>
<tr><td>- 문화체육사용분
* 도서, 신문,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상영관
* <신 설></td><td>30%</td></tr>
<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
<tr><td>- 신용카드</td><td>15%</td></tr>
</table>
○ 공제한도
<table>
<tr><th colspan="2">총급여
공제한도</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
<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
<tr><td rowspan="3">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만원</td><td rowspan="2">200만원</td></tr>
<tr><td>대중교통</td></tr>
<tr><td>문화비</td><td>-</td></tr>
</table></td><td>□ 문화체육사용분에 고궁 및 왕궁 관람을 위한 지출비용 포함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
<tr><th>구분</th><th>공제율</th></tr>
<tr><td>- 전통시장사용분</td><td>40%</td></tr>
<tr><td>- 대중교통이용분</td><td>40%</td></tr>
<tr><td>- 문화체육사용분
* 도서, 신문,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상영관
* 고궁 및 왕궁 관람료 (김재원의원안)
* 정기간행물 구독료 (전재수의원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이용금액(조승래의원안)</td><td>35%
(김재섭의원안)</td></tr>
<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
<tr><td>- 신용카드</td><td>15%</td></tr>
</table>
○ (현행과 같음)</td></tr>
</table>

* 김재원의원안 2025. 3. 25. 발의(의안번호 9322), 전재수의원안 2025. 4. 11. 발의(의안번호 9834), 김재섭의원안 2025. 6. 18. 발의(의안번호 10916), 조승래의원안 2025. 9. 24. 발의(의안번호 13211)

□ 4건의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30%의 비율로 공제되는 '문화체육사용분'의 공제율을 35%로 확대하거나, 공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먼저, 김재섭의원안은 문화체육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35%로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김재원의원안은 고궁과 왕릉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전재수의원안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정기간행물[22]의 구독료를, 조승래의원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이용금액을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는 체육시설 이용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로 소득공제가 적용될 예정임. 이때, 해당 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함.

---

2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 먼저 김재섭의원안은 현재 30%의 비율로 공제되는 '문화체육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음.

소득공제율 상향을 통해 도서, 신문, 공연 등 문화예술 산업계 전반에 소비가 진작되는 정책효과가 기대됨. 2023년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인 종합독서율은 2013년 72.2%에서 2023년 43%로 급감하였으며, 종이책의 경우 2019년 6.1권의 종이책 독서 권수는 2023년 1.7권에 이를 정도로 연간 종합독서량은 급감하는 추세임.

[매체별 독서량 추이]

[표 5] 매체별 독서량 추이 (Base : 전체 응답자, 단위 : 권)

	종이책			전자책			종이책 + 전자책			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		
	'19년	'21년	'23년	'19년	'21년	'23년	'19년	'21년	'23년	'19년	'21년	'23년
성인	6.1	2.7	**1.7**	1.2	1.5	**1.9**	7.3	4.2	**3.6**	7.5	4.5	**3.9**
학생	32.4	24.8	**26.2**	5.6	8.2	**7.8**	38.8	33.0	**34.0**	41.0	34.4	**36.0**

자료: 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2023년 공연예술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연시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9년까지 50% 내외를 유지하다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23.0%까지 하락하였고, 2022년 기준 42.3%로 코로나 이전의 재정자립도를 회복하지 못하였음

[공연시설 재정자립도 추이]

자료: 2023년 공연예술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24.11.25.

이에 개정안과 같이 문화시설 및 독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상향될 경우, 해당 산업군에 대한 소비가 증대되어 문화시설 및 산업 전반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 가능함.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예술 관련 지출은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세제지원을 통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선 방향으로 제도의 단순화 필요성이 제시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근로소득자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동 제도의 개편 방안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항목은 제도의 단순화였음.[23] 특히 도서,

23)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공연 추가공제혜택은 응답자의 70%가 '모르고 있다'로 응답하는 등 문화체육사용분 제도 운영에 따른 소비 장려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개정 방법 이외에도 재정지원(문화체육사용분 바우처)등을 통한 문화분야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202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24] 결과, 문화·체육 지출분 「신용카드 소득공제」도입으로 인해 문화생활비 지출이 증가한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문화·체육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 확대가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문화체육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는 경우 2027년~2031년 기간 동안 연평균 약 292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결과]

(단위: 억원)

세수효과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김재섭의원안 (문화체육사용분 공제율 상향조정)	-	△280	△286	△292	△297	△303	△1,458	△292

□ 다음으로, 김재원의원안은 문화체육사용분에 고궁과 왕릉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궁·능 시설 이용분")에 대해서도

24)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 신용카드 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획재정부, 2025.9.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고궁과 왕릉에 대한 관람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대궁 및 종묘, 조선왕릉관리지구 관람객 수]

(단위:명)

		2022년	2023년	2024년
4대궁 및 종묘 관람객	계	8,336,654	11,741,822	13,121,020
	유료	3,176,337	4,328,267	4,881,975
	무료	5,160,317	7,413,555	8,239,045
	외국인	522,281	1,985,337	3,145,437
조선왕릉 지구관리소	계	2,449,898	2,355,623	2,361,515
	유료	992,189	870,936	841,455
	무료	1,457,709	1,484,687	1,520,060
	외국인	18,621	26,490	31,393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 2024년 4대 궁궐[25]과 종묘, 조선왕릉의 관람객 수는 1,500만명을 상회하며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1천 339만 5,625명을 상회하는 수치임. 특히 외국인의 관람객 수 또한 전년 대비 약 60% 이상 증가하는 등 고궁 관람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의 궁중문화축전, 궁 야간개장 등의 특별 관람으로 궁능 관람에 대한 대외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에 따라 궁능 시설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함으로써, 궁능에 대한 내국인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궁능 관련

25)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문화재 보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과 같이 문화체육사용분에 궁능 시설 이용분을 추가하는 경우의 지원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2018년 당시 「문화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일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구독료, 영화티켓,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 범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그러나 궁능시설 이용분의 경우 현실적으로 재정 예산 투입[26]을 통해 그 관리비 대부분을 충당하고 최소한의 비용만을 관람객들에게 징수하고 있다는 점, 주요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고궁 등 문화재 관람료는 낮은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궁능 시설 이용분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

26) 2025년 예산: 국가유산 보수정비: 5,299억원, 궁능원 관리 1,431억원

[궁 · 능유적 관람요금 현황]

(단위: 원)

궁능유적	개인(대인)
경복궁	3,000
창덕궁 (전각관람)	3,000
창덕궁 (후원관람 - 경로)	5,000
창덕궁 (후원관람 - 대인)	5,000
창덕궁 (후원관람 - 소인)	2,500
창경궁	1,000
덕수궁	1,000
종묘	1,000

자료: 궁능유적본부

둘째, 궁능시설의 범위 설정 문제 및 유사성격 시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궁 또는 왕릉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그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 해당 이용분에 관리주체가 지자체인 고궁 또는 왕릉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할지 여부 등 시행령 상 범위설정 문제, ② 시행령에 따른 궁능시설 분은 아니나 전통 사찰 등 그 성격이 유사한 유적지와 전통문화 체험 시설(민속촌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포함 여부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음.

또한 개정안은 지원대상이 되는 "고궁 또는 왕릉"의 범위 및 "궁 또는 왕릉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규정 범위를 폭넓게 위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

으며, 해당 조세특례로 인한 세수감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곤란한 점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전재수의원안은 문화체육사용분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정기간행물[27]의 구독료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정기간행물에 대한 소비 의향 증대로 관련 산업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입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잡지, 기타 간행물'등을 의미하며, 정기간행물 등록건수 일간신문 및 인터넷 신문을 제외하고 2020년 12,199건에서 2024년 13,149건으로 그 등록건수는 점진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단위: 건)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기간행물 등록 건수	12,199	12,408	12,516	12,776	13,14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8]

2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28)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을 포함한 정기간행물 등록건수를 통계로 계상하고 있어 해당 수치는 전체 정기간행물수에서 일간신문 및 인터넷 신문을 제외한 값임.

그러나 정기간행물은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사회적 공익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독서추세 및 디지털 전환으로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에 개정안과 같이 정기간행물의 구독료에 대하여 문화체육사용분으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질 경우 정기간행물에 대한 구독 의향이 높아져 관련 산업의 새로운 수요가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정기간행물과 유사한 성격의 사용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현행법상 도서 등 문화체육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제 형태의 지원책이나, 개정안과 같이 정기간행물 역시 문화체육사용분에 포함될 경우, 간행물과 성격이 유사한 서면 교육자료, 교구 등에 대한 지출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둘째, 정부는 '제3차 정기간행물 진흥 5개년 기본계획(2022~2026년)'하에 정기간행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문화체육사용분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정기간

행물[29]의 구독료를 추가하는 경우 2027년~2029년 기간 동안 연평균 약 3.8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결과]

(단위: 억원)

세수효과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전제수의원안 (정기간행물 구독료 공제율 인상)	△3	△4	△4	△4	△15	3.8

□ 다음으로 조승래의원안은 문화체육사용분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이용료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다음의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첫째, 게임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문화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도서, 신문,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등과 달리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22년 기준 글로벌 게임 이용자는 약 33.4억 명으로 세계 인구(약 80억 명)의 42.5%에 달해 세계적인 대중 여가로 성장하는 주력 문화산업 중 하나이고, 관련 지적재산권을 여러 분야에 활용하는 OSMU(One Source Multi Use)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산업으로 영화, 소설, 웹

29)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툰 등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주류 문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에 대해서도 다른 문화산업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지원 요구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

□ 둘째, 게임업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한국 게임 시장의 규모는 전 세계 4위 수준이며, 2022년 기준 게임 수출액은 약 90억 달러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7.8%를 차지하는 등 국내 콘텐츠산업을 주도하고 있음.[30] 그런데 국내 게임시장은 2022년 최고 규모를 달성한 이후, 2023년에은 22년 대비 10.9% 감소하고 있으며, 매출액 증가율 역시 2020년부터 감소하는 상황임.

[국내 게임시장 매출 규모(2018-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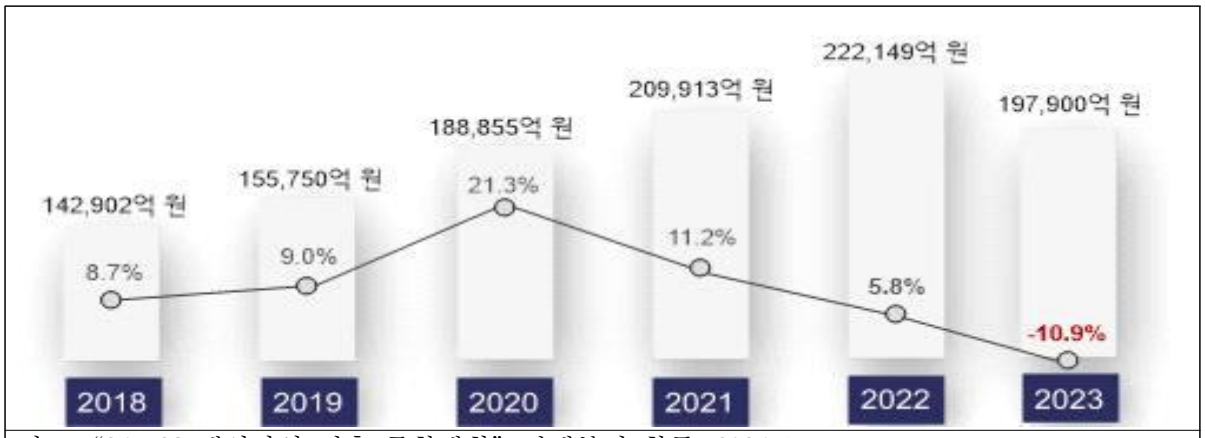

자료: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4.5.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점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주요 목적은 특정 산업의 지원보다는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는 것임. 그런데 게임이용료는 주로 휴대폰, PC 및 개인 콘솔기기 등을

30) 콘텐츠산업 수출액 132.4억 달러(약 18조 원) 중 게임 수출액 89.8억 달러(약 12조 원).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4.5.

활용하여 사용자가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모바일·PC 결제로 게임이용료가 결제되는 특성상 세원의 투명성이 높아 신용카드 등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높지 않음.

둘째, 현재 게임산업에 대해 제공되고 있는 세제상·재정적 지원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즉, ① 게임콘텐츠 제작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될 수 있음에 따라 R&D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경우 연구개발비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② 게임산업에 대해서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③ 게임산업에 2025년 예산 기준 1,016억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31]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셋째, 게임의 세계적 대중 여가 문화로서의 측면, 종합예술적 측면과 함께 게임 자체에 내재된 일부 사행적 요소(뽑기, 확률형 아이템), 게임 중독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민·중산층의 기본적인 건강증진, 문화예술 향유 지원 측면에서 개정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9

31)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등(한정애의원안, 이수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양부남의원안, 정부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6조의2)</td><td>○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td></tr>
<tr><td>○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td><td>○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td></tr>
<tr><td>○ 공제항목 및 공제율:</td><td>○ 공제항목 및 공제율: (현행과 같음)</td></tr>
<tr><td>
<table>
<tr><th>구분</th><th>공제율</th></tr>
<tr><td>○ 전통시장</td><td>40%</td></tr>
<tr><td>○ 대중교통</td><td>40%</td></tr>
<tr><td>○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td><td>30%</td></tr>
<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
<tr><td>○ 신용카드</td><td>15%</td></tr>
<tr><td colspan="2">○ <신 설></td></tr>
</table>
</td><td>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공제율</th></tr>
<tr><td colspan="3">○ 전통시장</td><td>40%</td></tr>
<tr><td colspan="3">○ 대중교통</td><td>40%</td></tr>
<tr><td colspan="3">○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td><td>30%</td></tr>
<tr><td colspan="3">○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
<tr><td colspan="3">○ 신용카드</td><td>15%</td></tr>
<tr><td colspan="3">○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td><td>한정애 의원안</td><td>이수진 의원안</td></tr>
<tr><td colspan="3">- 부양자녀 1명: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td><td>5%</td><td>10%</td></tr>
<tr><td colspan="3">- 부양자녀 2명: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td><td>10%</td><td>20%</td></tr>
<tr><td colspan="3">- 부양자녀 3명 이상: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td><td>20%</td><td>25%</td></tr>
</table>
※부양자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에 따르는 부양자녀
</td></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공제한도
<table>
<tr><td colspan="2">총급여 / 공제한도</td><td>7천만원 이하</td><td>7천만원 초과</td></tr>
<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
<tr><td rowspan="3">추가공제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만원</td><td rowspan="2">200만원</td></tr>
<tr><td>대중교통</td></tr>
<tr><td>문화비</td><td>-</td></tr>
<tr><td colspan="4"><신 설></td></tr>
</table>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td>
<td>○ 공제한도
<table>
<tr><td colspan="2">총급여 / 공제한도</td><td>7천만원 이하</td><td>7천만원 초과</td></tr>
<tr><td colspan="2" rowspan="2">기본공제 한도</td><td colspan="2">300만원(추경호의원안)</td></tr>
<tr><td>500만원(양부남의원안)</td><td>400만원(양부남의원안)</td></tr>
<tr><td rowspan="3">추가공제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만원</td><td rowspan="2">200만원</td></tr>
<tr><td>대중교통</td></tr>
<tr><td>문화비</td><td>-</td></tr>
<tr><td colspan="2">자녀수에 따른 추가 공제한도</td><td colspan="2">
<table>
<tr><td rowspan="2">자녀수</td><td rowspan="2">한정애 의원안</td><td rowspan="2">이수진 의원안</td><td rowspan="2">추경호 의원안</td><td colspan="2">정부안</td></tr>
<tr><td>총급여 7천만원 이하</td><td>총급여 7천만원 초과</td></tr>
<tr><td>1명</td><td>50만원</td><td>50만원</td><td>50만원</td><td>50만원</td><td>25만원</td></tr>
<tr><td>2명</td><td>100만원</td><td>100만원</td><td rowspan="2">100만원</td><td rowspan="2">100만원</td><td rowspan="2">50만원</td></tr>
<tr><td>3명 이상</td><td>200만원</td><td>150만원</td></tr>
</table></td></tr>
</table>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한정애의원안, 이수진의원안, 정부안, 추경호의원안, 양부남의원안)</td></tr>
</table>

* 한정애의원안 2025. 6. 5. 발의(의안번호 10663), 이수진의원안 2025. 7. 14. 발의(의안번호 11458), 추경호의원안 2025. 8. 20. 발의(의안번호 12274), 양부남의원안, 2025. 9. 12. 발의(의안번호 12932),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5건의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 먼저 한정애의원안, 이수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및 정부안은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인 비율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

제 규정을 신설하며,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한정애의원안은 부양자녀가 1명, 2명, 3명 이상 있는 경우 각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의 5%, 10%, 15%의 비율로 소득공제하며, 기본공제 한도에 추가적으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각각 더하려는 것이고,

이수진의원안은 부양자녀가 1명, 2명, 3명 이상 있는 경우 각각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의 10%, 20%, 25%의 비율로 소득공제하며, 기본공제한도에 추가적으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을 더하려는 것이며,

추경호의원안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초과(250만원) 구간의 기본공제 한도를 50만원 상향하여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가 1명인 경우 50만원을, 2명 이상인 경우 100만원을 각각 공제한도에 더하는 것이고,

정부안은 부양자녀가 1명, 2명 이상인 경우 각각 기본공제한도를 상향하는 것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부양자녀 1명), 100만원(2명 이상)을, 연소득 7,000만원 초과인 경우 25만원(1명), 50만원(2명 이상)을 각각 더하려는 것임.

□ 또한 양부남의원안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의 구간에 대해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려는 것임.

□ 한정애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및 추경호의원안은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규정을 신설하고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첫째, 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저출생 문제 해소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32]이 2017년 1.05명 수준에서 2023년 0.72명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 반등하였으나,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로[33]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통계청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그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32) 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33)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OECD평균
0.81	1.66	1.53	1.58	1.80	1.30	1.58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근 반등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둘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영유아 가구[34]의 평균 자녀양육비 지출은 월 111만 6천원으로 2024년 가구 소득 대비 17.8%, 가구 지출 대비 29.4%로 나타났음. 이는 2021년 월 97만 6천원 대비 14만 증가(14.3%)[35]한 수치임. 또한 중국 내 인구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를 경우 한국에서 자녀를 만 18세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1인당 GDP의 7.79배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이와 같이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인 소득공제를 설정할 경우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증가한 소비지출 상승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면세점이하의 저소득자[36]는 소득공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에 변화가 없는 반면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의 확대에 따른 수혜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게 되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

둘째,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세제·재정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34)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함.

35)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5.5. 참고로 동 조사는 3년 주기 조사임.

36) 2023년 33%

만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만원 또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고[37], 만 7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원되며, 소득기준 충족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등 다양한 재정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또한 세제지원 제도로는 자녀장려금, 6세 이하 출산·보육 수당에 대한 비과세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한정애의원안 및 이수진의원안은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신용카드, 현금직불 카드 등 전체 사용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공제액을 설정하고 있고, 금액의 차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공제항목별 사용분에 해당 항목에 상응하는 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뒤 법 제126조의2제2항제6호[38]의 금액을 차감하는 구조로 설계되

---

37)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3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10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40

어 있는데, 이러한 산식을 구성한 목적은 전체 소비금액이 아닌 총급여액의 25%인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소비분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함임.

따라서 한정애의원안 및 이수진의원안과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사용처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큰 경우 소득공제 한도에 도달할 수 있어, 고소득자 중 소비 여력이 높은 자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39]

□ 다음, 양부남의원안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를 경우 체감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비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소비심리의 자극을 도모할 수 있음. 단기적으로는 미국 관세 충격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됨과 동시에 국내 물가 불안정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소비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경우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여 내수기반을 보강하는데 도움을 줌과 함께, 근로소득자의 세

39) 또한 개정안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전체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소득공제금액을 설정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신용카드의 사용처 및 결제방식에 따라 상이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특정 소비처 및 결제수단을 장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전체 소비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할 경우, 본 제도의 도입취지와 상충한다는 비판도 존재할 수 있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고소득자에 더 크게 귀착되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40]는 소득공제 한도의 상향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에 변화가 없는 반면,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의 확대에 따른 수혜를 더 받게 되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고,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음.

둘째, 전체적인 조세지출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4년의 경우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 제80조[41]에 따른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42]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세지출 규모의 확대 측면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세감면액 규모]

(단위: 억원, %)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국세감면액 (A)	570,248	635,484	697,664	705,171	764,719	805,277
국세수입총액 (B)	3,639,730	4,229,237	3,703,803	3,656,829	4,003,076	4,195,673
국세감면율 [A/(A+B)]	13.5	13.0	15.8	16.1	16.0	16.1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3	14.6	14.3	14.6	15.5	16.5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40) 2023년 33%

41)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42) 0.7%p

□ 한편 추경호의원안 및 정부안은 두자녀와 세자녀 이상에 대한 추가 공제한도 규모를 동일하게 확대하고 있는데, 다자녀 가구의 추가 양육비를 세제혜택을 통해 보정하지 못해 수평적 형평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양부남의원안에 따라 공제한도를 확대할 경우 연 평균 2조 2,900만원의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예상되므로, 공제한도의 확대에 따른 수혜와 조세지출 규모의 확대에 따른 국가재정여건 악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결과]

(단위: 억원)

세수효과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한정애의원안 (자녀수별 공제한도 확대 등)	△15,802	△15,268	△14,697	△14,225	△59,992	△14,998
이수진의원안 (자녀수별 공제한도 확대 등)	△14,794	△14,198	△13,702	△13,244	△55,937	△13,984
추경호의원안 (자녀수별 공제한도 확대 등)	-	△7,295	△7,238	△7,170	△21,703	△7,234
양부남의원안 (공제한도 확대)	-	△21,547	△22,870	△24,284	△68,700	△22,900

□ 또한, 기획재정부는 정부제출안과 같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부양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도를 확대할 경우, 2027년에서 2030

년까지 4년간 총 15조 699억원(연평균 3조 7,675억 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함.

[정부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30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정부안	△49,249	△49,249	△49,249	△2,952	△150,699	△37,675

문 의 처
02)6788-5149